

3.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명세

구분	오염 물질명	평균배출농도 (mg/Sm³, ppm.도, mg/L)	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, 총연료사용량 (kg)	지역구분	조업 일수	종류
대기 오염물질						
수질 오염물질						

○ 부과기간 : ~ (일) (기간 중 미조업일수 : 일)

가. 오염물질등 1kg당 부과금액 원(A)

나. 기준이내 배출량

- 총연료사용량 × 황산화물 배출계수 kg(B)
- 일일평균 배출량 × 조업일수 kg(B)

(기준이내 추가배출량을 합산한다)

다. 농도별 부과계수

- 영 별표 5 제1호라목1)에 해당하는 시설 (C)
- 영 별표 5 제1호라목2)에 해당하는 시설 (C)
 - * 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= (배출농도/최대배출기준농도) × 100
- 영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(C)
 - *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= (배출농도 - 방류수수질기준) / (최대배출기준 - 방류수수질기준) × 100

라. 지역별 부과계수 (D)

마.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(E)

바. 사업장별 부과계수 (F)

사. 기본배출부과금 = (A) × (B) × (C) × (D) × (E) × (F) 원

- 가산금 : 기본배출부과금 × 3/100 원
- 납기 후 부과금 : 기본배출부과금 + 가산금 원

※ 배출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작성하여 합산하되,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기록하여
갖추어 두고 사업자의 요청 시 열람하도록 합니다.

작성일자 : 년 월 일
작 성 자 : (서명 또는 인)